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53 발의연월일: 2021. 2. 24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박상혁 · 이수진

박 정・김홍걸・박성준

윤준병 · 유정주 · 이상직

김성주 · 장경태 · 이규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 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로 궁능, 전시관 등 문화재구역 및 실내·외에 문화재가 보관 및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재 관람이 제한되고 있음.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 병에 대비한 문화재구역 등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 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) ①	제6조(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5의2.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
	런 시설에서의 감염병 등에
	대한 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
	<u>사항</u>
6. ~ 9. (생 략)	6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